



2012. 4.

2011년도 임금협약단체협약 잠정합의서

대 전 도 시 공 사
대 전 도 시 공 사 노 동 조 합



2012. 4.

2011년도 임금협약단체협약 잠정합의서

대 전 도 시 공 사
대 전 도 시 공 사 노 동 조 합

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서

1. 임금협약 관련

가. 임금인상 : 2010년 총액대비 4.1% 인상

- 호봉승급분 2% 이내 별도

나. 인센티브 성과급 평균임금에 산입

- 2012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추진

다.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

- 개인별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30% 의무사용. 단, 레저사업본부 근무자 및 환경사업본부내 교대근무자는 15% 의무사용

2. 단체협상 관련

가.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확대 및 기간연장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

-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만8세이하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

나. 직원의 복리증진과 여가선용 확대를 위하여 콘도계좌 증설

- 콘도 3계좌 증설

다. 태아검진비 지원

- 임신중인 여성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0조(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)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한 후 시간외근무 실시
 - 지원(담당)부서가 일괄 접수 및 신청한다.

라. 조합가입범위 확대 및 3급 무보직 직원 호봉제 전환

- 제도개선위원회 재논의

마. 직급통합(4급 ~ 7급)

- 제도개선위원회 재논의

바.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

- 「임단협에서 제외 후 별도 협의 내용」 반영

사. 근무성적 평정방법 개선

- 제도개선위원회 재논의

아.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변경

- 단체협약 제2조 “유일 교섭단체” 를 제2조 “교섭단체” 로 변경한다.
- 단체협약 제12조 조합 전임자 및 임원의 대우중 제1항 “목표관리평정” 를 “성과관리평정” 으로 변경 한다.
- 단체협약 “제12조의 1 (근로시간 면제 시행)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로 별도 시행한다” 를 신설 한다.
- 단체협약 제29조 “특별채용” 를 “채용” 으로 변경하고 제2항 “공사는 직원이 재직 중 순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와 공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공사채용 기준에 따라 특별 채용한다. 그에 따른 채용기준과 절차는 노사협의를 의한다” 를 “공사는 직원이 재직 중 순직·공상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 피부양자 가족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” 로 변경 한다.
- 단체협약 제56조 보건, 태아검진, 산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개정한다.

- 단체협약 제74조 교섭사항중 제5항 “고용보장” 를 “고용안정” 으로 변경 한다.

3. 규정개정등 절차이행

-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의하여 제규정 개정절차를 이행한다.
- 기존에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며, 합의된 것으로 본다.

4. 2012년 1월부터 적용

- 임금협약 관련 : 나항목을 제외한 가,다 항목
- 단체협약 관련 : 다,라,마,바,사,를 제외한 가,나,아 항목

2012. 4. 16.

대전도시공사

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

대표교섭위원

홍인익(인)

대표교섭위원

도형남(인)

